

불임 4 내리마루 문화쉼터 시범운영지침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내리마루 문화쉼터 시범운영지침

* 내리마루 문화쉼터 시범운영에 따른 한시적(2025.1.~ 운영규정 수립까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 · 운영하고 있는 내리마루 문화쉼터(생활문화센터)(이하 ‘내리마루 문화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내용은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 장비)에 적용한다. 또한 운영하는 시설, 장비는 각 호와 같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시범운영기간 중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로 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3.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허가 하에 휴관
5.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준하는 방침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제4조(대관대상 시설)

- ① ‘내리마루 문화쉼터’의 대관대상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 ②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관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 해 대관대상 시설과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대관목적 및 용도) ‘내리마루 문화쉼터’ 대관시설의 목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내리마루’ 대관시설은 문화사업을 위한 사용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 관련 단체, 개인, 동아리 등에 대관한다.
- ② ‘내리마루 문화쉼터’ 대관시설은 주민의 문화 및 예술활동을 위한 연습, 회의, 공연, 전시, 기타 문화예술 관련 사용목적에 한하여 대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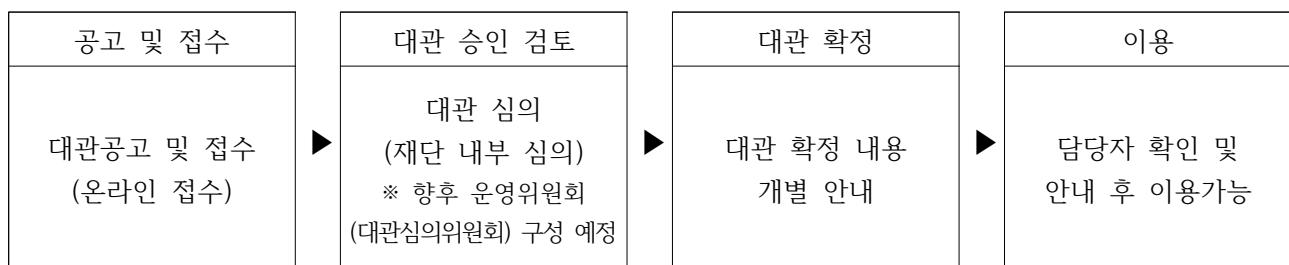
제6조(대관시간) ① 대관시간은 사용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 ② 대관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시간선택제로 운영한다.
- ③ 단, 동일 신청단체 및 개인당 1주 최대 9시간(3타임) 이내, 월 5회 이내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09:00~12:00(3시간)
오후 A	12:00~15:00(3시간)
오후 B	15:00~18:00(3시간)

* 시간선택제 운영(오전, 오후A, 오후B, 전일 중 택 1)
* 동일 신청단체 및 개인당 1주 최대 9시간(3타임) 이내, 월 5회 이내 신청 가능(초과 시, 당월 신청 불가)
- 동일 단체 내 회원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됨
* 기획전시실, 복도갤러리 이용 시, 신청단체 및 개인당 1회 최대 가능 전시일 수 : 14일(설치 및 철수일 포함)

제7조(대관절차) ① 대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대관기간) ① ‘내리마루 문화쉼터’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은 반기별 운영한다.

- ② ‘내리마루 문화쉼터’ 대관시설의 수시대관 기간은 정기대관 및 재단 사업 일정 확정 후 잔여기간 내에 사용하며, 분기 단위로 공고하고, 1개월 단위로 대관이 이루어진다.

제9조(대관신청) ①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 양식의 대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대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신청 관련 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와 같다.

② 정기대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등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대관신청의 진행과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신청은 반기별 공고 기간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등 제출하여 신청한다.

2. 정기대관 신청 기간은 반기별 대관 시작 기간 30일 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 등 상업적 강습 목적의 대관

2.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음, 진동 등으로 타 이용자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4.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지닌 대관의 경우

6.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예 : 공개 오디션 등)

7. 이외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대관승인 심사) ①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운영 하므로, 대관신청 내용이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 목적 및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내리마루 문화쉼터 시범운영지침’ 제5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부서장이 대관을 승인한다.

② 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개인)가 경합하는 경우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의 효율성과 신청단체(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합 단체(개인)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신청내용을 변경 및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나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승인한다.

1. ‘내리마루 문화쉼터’ 자체 프로그램 혹은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2. 인천 중구 및 인천중구문화재단 주관 행사, 공동사업 협력기관 및 단체의 경우

3. 인천 중구 거주자 또는 인천 중구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단체, 개인의 경우

4. 타지역 거주자 또는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단체, 개인의 경우

③ 경합이 없을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승인한다.

제11조(대관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대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관 취소가 가능하다.

제12조(사용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행위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대관 사용권을 타 단체(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 유해행위로 '내리마루 문화쉼터 시범운영지침'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국가적 재난 또는 감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재단의 판단 후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관 당일 및 무단 취소 3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본 지침은 대표이사의 방침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내리마루 문화쉼터 대관시설 현황

시설현황

상상마루 (프로그램1883)	윤슬마루 (기획 전시실)	윤슬마루 (상설 전시실)	소원마루 (에듀케이션1883)	배움마루 (북카페)	햇살마루 (아트스페이스)
수유실	복도 갤러리				
화장실	창고	청년공간	달빛마루 (공유 회의실 1)	별빛마루 (공유 회의실 2)	입구

대관시설

구분	면적	적정 수용 가능 인원	공간 사진
소원마루	101.9m ²	50명	
상상마루	84.1m ²	30명	

달빛마루	25.5m^2	15명	
별빛마루	24.5m^2	15명	
윤슬마루	80.0m^2	40명	
벽면갤러리	5.3m 13.5m 19.7m 8.2m	-	